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58
------	-----

2023. 3. 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2월 3일, 박 석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3. 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 석 의원)

1. 제안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과 여성기업 주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와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기여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을 추가함(안 제9조).
- 나.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 및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여성기업 주간 개최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함(안 제9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2022.4.20.)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지원, 여성기업 주간 기념 행사 개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시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 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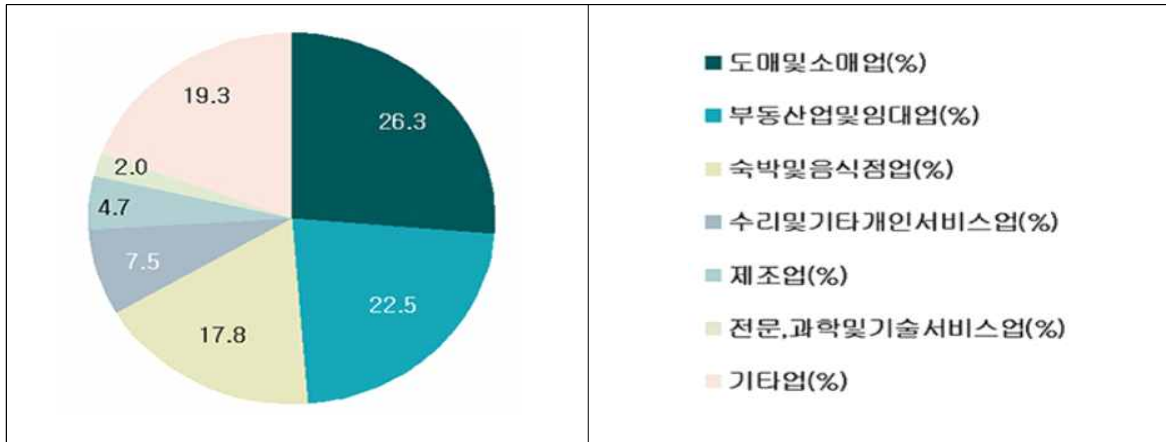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¹⁾은 전체기업의 40.2%인 277만개(497만명)로 기업과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도매·소매업(26.3%), 부동산업(22.5%), 숙박·음식업(17.8%)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1)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를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 분포 현황(2019년 기준)>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위상 및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2019년 기준)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830>

- 여성기업이 국민경제와 창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가 작고 여성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 운영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²⁾
- 이에 정부³⁾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5년마다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특화 창업지원 확대,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경력단절, 돌봄 등을 고려한 여성기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⁴⁾(참고자료 1).

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여성기업 자료집(2021~2022년), 2021.12.

3) 타 부처의 지원 정책으로는 ▶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 정보 제공, 창업지원 상담,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 ▶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공계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여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IT여성기업인협회 지원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ICT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4) 구체적으로는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① 여성 창업지원, ② 여성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③ 여성기업 경영지원 등 12개 사업에 101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예산 : ('20) 99억원 → ('21) 88억원 → ('22) 88억원 → ('23) 101억원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 주요내용(2018~2020년)>

연도	정책목표	추진과제
2018년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혁신을 통한 여성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중심 :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지원 - 상생 혁신 :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확립 및 상생 협력 활성화
2019년	여성 창업·벤처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여성인력 창업·벤처 활성화 - 기술, 금융, 인력 등 지속성장 지원 - 국내·외 판로촉진 - 연구조사 및 정책정보 제공 - 공정경제 확립 및 상생 협력 활성화 -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2020년~ 2024년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혁신창업기업 육성 등을 통해 여성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창업지원 확대 - 여성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 여성 및 여성기업 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단절 애로 해소 - 여성기업 지원체계 고도화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각연도
 ※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4년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 서울시 또한, 매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창업활성화, 자금지원, 판로지원 분야 등에 3,117억 7천 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참고자료 2).

- 서울시 여성기업 사업체 수는 62만 2,097개로 전국 여성기업(295만 1,883개)의 21.1%를 차지하고 있음⁵⁾.

다.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안 제9조)

○ 안 제9조는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신설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5)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 2022.7.28.).

- 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4.20.)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021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교육 강화’가 45.2%로 가장 높았음⁶⁾.

- 여성기업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 인식이 53점에 그쳤으며,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의무⁷⁾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도 64% 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별다른 인식이 없었다”고 응답함⁸⁾.

6) 그 다음 방안으로는 ‘주기적인 차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25.9%), ‘여성기업 차별 금지와 관련한 법령 강화’(21.4%) 등의 순임.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 이상을 구매해야 함.

8)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8 여성기업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2018.12., 29면·64면

<공공기관의 평소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별다른 인식은 없었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구매율 높은 기관		400	7.8	64.5	27.8
기관 유형	국가기관	24	8.3	66.7	25.0
	준정부기관	51	9.8	56.9	33.3
	공기업	92	7.6	58.7	33.7
	지자체	162	8.0	67.3	24.7
	기타	71	5.6	70.4	23.9
소재지	수도권	157	8.3	68.2	23.6
	경남권	57	5.3	59.6	35.1
	경북권	33	9.1	54.5	36.4
	전라권	56	5.4	75.0	19.6
	충청권	97	9.3	58.8	32.0
구매율 낮은 기관		100	5.0	69.0	26.0

※ 구매율 기준 상위 80%는 구매율 높은 기관, 하위 20%는 구매율 낮은 기관으로 분류(조사대상:788개 공공기관)

- 따라서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은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차별적 대우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여성기업 조례 개정(2021.3.25.)⁹⁾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산업 분야, 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연수·지도

9)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신설>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신설>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신설>
7.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신설>
8.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미추진하고 있어 입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라. 여성기업 주간(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는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과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여성기업 주간에 적합한 기념행사 개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매년 7월 첫째주¹⁰⁾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서울시 차원의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임.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2.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포상
 3.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

10)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최로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행사」를 2022년 7월 5일 개최함.

-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는 여성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임.
- 다만, 중앙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서울지역 여성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고	문의
창업	■ 여성 창업보육 센터 운영	■ 전국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공간(238개실) 및 멘토링 제공	■ 예비 여성창업자 ■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수시	여성기업 종합지원 센터
	■ 여성창업 엑셀러레이팅	■ 여성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 여성창업자 시상 및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 총 32팀 시상(대상 1팀 상금 2,000만원) * 우수 여성창업자 초기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등	■ 예비 여성창업자 ■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단, 투자유치금액 30억 미만일 것)	1월	
판로	■ 여성 판로역량 강화 지원	■ TV안방구매(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안방구매(홈쇼핑) 입점, SNS광고홍보 영상 제작비, 교육, 구매상담회 지원(831개사)	■ 여성기업	수시	여성 경제인협회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 등을 위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	수시	
	■ 여성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확대 지원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 및 사이트 운영 ■ 전자입찰 등, 공공구매 실무 교육 운영	■ 여성기업	1월	
수출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지원	■ 여성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300명),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전시회 참가 등 실무지원(40개사)	■ 내수 및 수출초보 여성기업	1월, 3월	
인력	■ 여성기업 전문 인력 매칭 플랫폼	■ 여성기업 인력채용을 위한 여성기업 전담매니저 1:1 매칭지원 인재 발굴 및 비대면 면접 등 지원 (www.iljarahub.or.kr)	■ 여성기업	수시	여성기업 종합지원 센터
	■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	■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수출, 경영전략 등을 온오프라인 상담 (www.desk.or.kr) * 전국 센터에 창업, 수출, 노무, 자금 전문가 6명 상주	■ 예비 여성창업자 ■ 여성기업	수시	
	■ 선배 여성 CEO 멘토링	■ 데스크 상담후 자금, 수출,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심층상담을 원하는 여성기업에 멘토링 진행	■ 예비 여성창업자 ■ 여성기업	수시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여성 CEO, 임원 및 예비창업자 대상 오프라인 교육 (연 1회, 150명)	■ 예비 여성창업자 ■ 여성기업	5월	
	■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 성공한 여성기업인들의 후배 여성경제인 육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멘토링, 여성기업탐방, 해외연수 진행 (20개교, 600명)	■ 여성특성화고 ■ 여자대학 (전문대, 일반대)	1월	여성경제인 협회
	■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 여성 CEO, 임원 1박 2일 연수 (연 1회, 1,000명)	■ 여성 CEO ■ 여성 임원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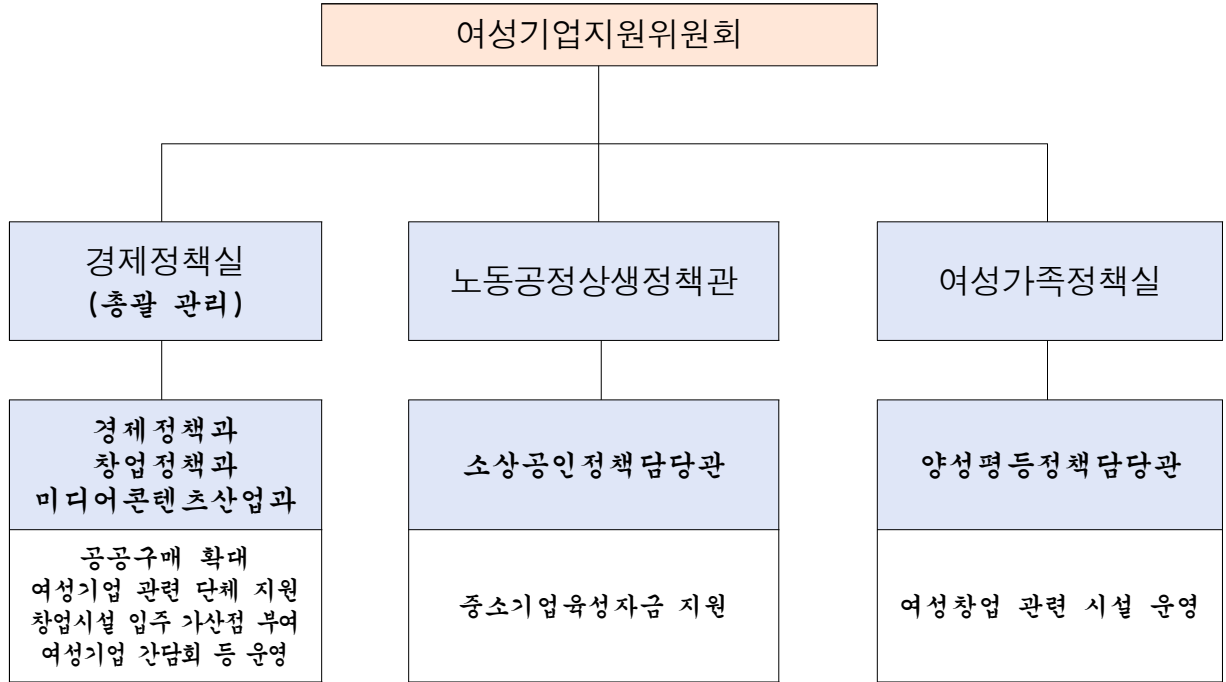
□ 여성기업육성사업 예산(2022년 및 2023년 개편 요약)

(단위 : 백만원)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① 여성창업 지원	3,956	① 여성창업 지원	3,956
▪ 센터 운영 (W-창업패키지, 시설개선 포함)	3,406	▪ 여성창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시설개선, 센터확장 포함)	3,556
▪ 센터 확장	400	▪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W-창업패키지+창업경진대회포함)	400
▪ 여성창업경진대회	150		
② 여성기업 판로지원	2,892	② 여성기업 판로지원	2,892
▪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	2,022	▪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	2,022
▪ W-디지털판로지원	550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550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20	사업종료	
▪ 여성특화 해외진출 지원	300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	320
③ 여성기업 인력지원	1,226	③ 여성기업 인력지원	2,513
▪ 일자리 플랫폼 운영	400	▪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운영	400
▪ 여성경제인 DESK 운영	330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 운영	330
▪ 여성CEO최고경영자과정	360	▪ 여성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360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36	▪ 여성기업 네트워킹 운영 (여성기업주간, 경영연수 포함)	536
▪ 여성기업주간	100		
▪ 미래여성경제인육성 ('23)	-	▪ 미래여성경제인육성	887
④ 조사연구 등	744	④ 조사연구 등	744
▪ 여성기업 실태조사	250	▪ 여성기업 실태조사	250
▪ 여성기업 조사연구	394	▪ 여성기업 정책분석	394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100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100
계	8,818		10,105

【참고자료2】 2022년 서울시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추진 계획

□ 지원 체계도



□ '22년 소요예산 : 총 9개 사업, 311,179백만원

추진분야	추진과제	소관부서	예산 (단위: 백만원)
창업 활성화	① 스페이스 살림 운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782
	②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105
	③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330
	④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2,014
	⑤ 여성기업 입주 시 가산점 부여	창업정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자금 지원	⑥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000
	⑦ 여성기업 관련 단체 지원	경제정책과	200
판로 지원	⑧ 공공구매 확대 및 홍보 지원	경제정책과	296,748 (목표액)
기반 조성	⑨ 여성기업과의 소통 창구 구성·운영	경제정책과	-
합 계			311,179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5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박 석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송경택,
신동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40명)

1. 제안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여성기업 주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와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을 추가함(안 제9조).
- 나.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 및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여성기업 주간 개최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여성기업 주간) 시장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신설></p> <p>8.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p> <p>2. ----- 법 제2조제2호----- -----.</p> <p>3. (현행과 같음)</p> <p>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여성기업 주간) <u>시장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 그</u></p>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